

## 성남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조리사) 채용 공고

경기도 성남소방서 무기계약근로자(조리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8일

성남소방서장

### 1. 채용개요

-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채용분야 : 조리사 (단시간/6시간)
- 담당업무 : 조리 및 식당 위생관리 등 (식당 청소, 설거지 포함)
- 채용인원 : 1명

### 2. 근무조건

- 신분 :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 계약기간 : 2024. 6. 1.(토)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정년 만 60세
- 근무시작일 : 2024. 6. 3.(월) 예정 \* 근무시작일은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 근무일 : 주 5일
- 근무시간 : 주 30시간(1일 6시간, 휴게시간 제외) / 협의 예정
  - ※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일/공휴일 근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성남소방서 상대원119안전센터
  - ※ 채용 후 성남소방서 내 119안전센터 순환 근무 실시

- 보수 및 복무 :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함
  - 무기계약근로자 '가'직군 해당호봉의 봉급표 ※ 『별표1』 참조
  -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48시간 이내)

### ○ 기타

- 명절휴가비 : 봉급의 75% × 연 2회(설, 추석)
- 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 그 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에 따름

### 3. 응시자격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인 자(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 ※ 단, 남자의 경우 2024.5.8.(공고일 前 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거주제한 : 공고일 前 일(2024.5.8.)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 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 공고일 前일(2024.5.8.)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위의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 :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조리”의 자격 소지자, 조주기능사 제외
- 우대사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 (준고령자 :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 : 55세 이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 응시결격사유

- 「경기도 공무원직 등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6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경기도 공무원직 등 운영 규정
<p><b>【제10조 결격사유】</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성년후견인</li> <li>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li> <li>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li> <li>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li> <li>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li> </ol> <p><b>【제67조 정년】</b> 공무원직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p>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p><b>【법 제40조(건강진단)】</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li> <li>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li> <li>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li> <li>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li> </ol> <p><b>【시행규칙 제49조(건강진단 대상자)】</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한다)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li> <li>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li> <li>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li> </ol> <p><b>【시행규칙 제50조(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b></p> <p>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li> <li>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li> <li>3.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li> <li>4.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li> </ol>

\* 결격사유 세부사항은 「8. 유의사항」 참조

## 4. 시험일정

### ○ 채용절차 및 세부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실기.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발표
'24. 5. 8.(수) ~ 5. 15.(수)	'24. 5. 17.(목)	'24. 5. 18.(금) ~ 5. 24.(금)	'24. 5. 27.(월)

채용절차	추진일정	장 소	소요기간
채용공고	'24. 5. 8.(수) ~ 5. 15.(수)	성남소방서 홈페이지, 워크넷	7일
원서접수		방문, 등기 또는 이메일 접수	
1차 서류심사	'24.5.16.(목)	성남소방서 소방행정과	1일
1차 합격자 발표	'24.5.17.(금)	성남소방서 홈페이지, 개별 통보	1일
2차 실기시험 (조리)	'24. 5. 18.(금) ~ 5. 24.(금)	성남소방서	7일
3차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4. 5. 27.(월)	성남소방서 홈페이지, 개별 통보	1일
근로계약 체결	'24.5.28.(화)~5.31.(금)	성남소방서 소방행정과	4일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 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변경 시 개별통보)
-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은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 5. 응시원서

### ○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기간 : 2024. 5. 8.(수) ~ 5. 15.(수) / 7일
  -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성남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주소 :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64, 3층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등기) 또는 전자메일 접수
  - \* 전자메일 접수 : leee0520@gg.go.kr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모든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등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제출서류 미참·미비 등일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내에만 보완 가능하며 접수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발급소요기간이 있는 보건의증의 경우, 나머지 필수서류 제출완료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지참 응시가능**

- 응시번호 부여방법 : 응시서류 접수 순(문자통보 예정)

※ 응시표 수령 안내 : 실기시험 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교부

## 6. 시험방법

### 가. 시험방법

#### ○ 1차시험 : 서류심사

- 제출서류 종류(미비, 미 첨부), 채용자격조건, 우대요건, 허위기재 및 위조여부 등 적격여부 확인

※ **결격사유, 채용관련 서류가 미비·미참 및 허위·위조로 확인될 경우 탈락**

#### ○ 2차 시험 : 실기시험 ⇨ **시험일시 및 세부사항 변경 가능**

-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 - 평가방법 (70점)

-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을 심사
  - ※ **평정요소(3개 항목) : ① 음식을 조리하는 태도 ② 청결 상태 ③ 음식의 맛**
- ▶ 실기과목(음식) : **시행부서에서 별도 선정** / 실기시간 : 30~60분
- ▶ 절대평가(위원별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평가결과 : 미공개

- **준비사항 : 개인위생용품 등(응시자 지참)**

#### ○ 3차 시험 : 면접시험

- 시험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별도 통보

#### - 평가방법 (30점)

- ▶ 1차 서류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평정

※ **평정요소(3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업무 성실성 및 예의·품행**

- ▶ 절대평가(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총합의 평균으로 평정점수 산정)

\* **위원의 과반수가 1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탈락**

#### ○ 최종 합격자 결정

- 실기 및 면접시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선발 예정인원의 2배(2명) 별도 선발

#### ※ **등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

- 1순위.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사람
- 2순위. 실기시험 점수가 높은 자(조리사)
- 3순위.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나. 채용후보자 등록

#### ○ 대 상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는 제외, 예비합격자의 경우 추가 합격자 발표 시 등록절차 진행**

#### ○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 ○ 등록 전 확인사항

- 채용신체검사서를 통한 부적합 사유 발생 시 근무중에도 합격취소

- 조리사 면허증(자격증)의 유효여부 확인하여 자격상실 등 발생 시 합격취소

## 7. 제출서류

제출 서류		비고
공 통	1. [별지1호] 응시원서 2. [별지2호] 이력서 3. [별지3호] 자기소개서 4. [별지4호]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5. [별지5호]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6.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공고일('24.5.8.)이후 발급등본만 인정> 7. 주민등록초본 1부(원본) <공고일('24.5.8.)이후 발급, 병역사항 포함> ※ 남자에 한함 8. 조리사 자격증(사본) 9.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원본) ※ 발급소요기간이 있는 보건증의 경우, 나머지 필수서류 제출완료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지참 응시가능	
해당자	1. [별지6호]경력증명서(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양식'에 있는 경력증명서 서식으로 반드시 작성 제출 / 별도 서식 불인정 2. [별지7호]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3. [별지8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 4.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취업보호지원서	
최종 합격자	채용신체검사서	

### 가. 항목별 주의사항

#### ○ 면허증 및 자격증

- 면허증 및 자격증 인정 기준일자 : **공고 前 일(2024. 5. 8.)**  
 ※ 면허증 및 자격증은 채용후보자 등록까지 유효하여야 함(자격상실 등의 경우 합격취소)
-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면허(자격)증 취득일 기준
- 폐지된 면허증 및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 경력 및 재직증명서

- 경력 인정 기준일자 : **공고일 前 일(2024. 5. 8.)**
- <별지 6호> 경력증명서 서식을 활용하여 반드시 작성  
 \* 근무부서, 기간, 직급(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메일 접수 시 스캔본 가능
- **경력증빙자료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반드시**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발급
  - **폐업회사의 경우**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및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함께 제출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 인터넷([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 주민등록등본 \* 공고일(2024. 5. 8.) 이후 발급한 원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 전입 일자가 확인 가능해야 함

※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자격 미비,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4일 경과 시 제출서류 폐기

- 응시원서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2명)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퇴사 등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합격자(예비합격자 중 고득점 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의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클립 활용/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 응시 제출서류(공통서류, 개별서류)는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본 공고문은 성남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031-720-0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